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2. 22 선고 2022가단1063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오성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 11.

판 결 선 고 2023. 2. 22.

주 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22. 2.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 1) E 주식회사는 2017. 1. 9. C에게 9,000,000원을 대출기간 42개월, 이율 연 9.4%, 연체이율 연 2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2) C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연체하자, E 주식회사는 2018. 3. 20.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 3) 원고는 2018.경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54966호로 위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8. 29. 확정되었다.
- 4) 2022. 8. 4.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액수는 18,614,511원 및 위 금원 중 9,000,000원에 대한 2022. 8. 5.부터 연 2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다.

나. C와 피고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

- 1) 망 F은 2021. 11. 1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3/13), 자녀인 C(2/11), G(2/11), H(2/11), I(2/11), J(2/11)이 망 F의 재산을 각 지분별로 상속하였다.
- 2) 망 F의 상속인들은 2021. 11. 14.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2. 2. 3. 위 협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실행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여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K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는 이러한 행위로 위 상속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위 행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다. 사해행위의 취소

결국 C와 피고 사이에 C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인 2/13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

별지